

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상 규정

2007.11.26 제정

2009. 1.31 개정

2014. 4.19 개정

2021. 4.17 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상자격) 수상자격은 도시설계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 3 조 (시상의의 및 시상분야) 시상 대상 분야는 도시설계관련 분야이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저술상: 저술상은 도시설계분야의 탁월한 저술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것으로, 시상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저서 또는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논문상: 논문상은 도시설계의 방법을 진작시키고 새로운 생각과 철학을 일깨워주는 등 우수한 논문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시상하는 것으로, 시상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도시설계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 도시설계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일 경우, 일반 논문과 설계형논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상할 수 있으며, 이 때 논문 총저자 수는 3인이하여야 한다.
- ③ 작품상: 작품상은 도시설계 실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실성있는 이론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것으로, 시상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도시설계관련 작품의 계획안 및 실제로 계획이 실행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.
- ④ 신진학술상: 젊은 연구자(만 45세 이하)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, 시상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한국도시설계학회 학회지 및 도시설계 관련 해외 저명 학회지 또는 단독 저서와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논문은 젊은 연구자가 주저자(1저자)이어야 하고, 총 저자 수는 2인 이하여야 하며, 저자에 중견 연구자급 이상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4 조 (시상인원) 학술상은 각 부문에서 1인 또는 1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심사결과 부문별로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.

제 5 조 (시상내용)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학술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제 2 장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

제 6 조 (후보자의 추천) 학술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.

- ① 학회이사급 이상회원은 후보자 1인 혹은 1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② 일반회원은 5인 이상이 공동으로 후보자 1인 혹은 1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③ 외부단체(관련학회, 연구기관 등)는 단체장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④ 후보자의 추천은 학회의 양식에 따른다.

제 6 조의 2 (추천서류) 학술상 후보자를 추천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공적증명자료 중 등록된 자료일 경우, 피추천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.

- ① 도시설계학회 학술상 추천서 2통 (별표1)
- ② 피추천자의 공적조서 2통 (별표2)
- ③ 피추천자의 업적 및 공적 증명자료 2부 (저서, 논문, 작품 등을 말한다.)

제 7 조 (심사의 진행) 심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① 심사위원회: 심사위원은 15인 내외로 상임이사회에서 임명한다. 그리고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5인 내외로 시상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 : 심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(서류접수, 심사 자료준비 등)를 담당하며, 학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한다.

제 8 조 (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)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자격과 임명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심사위원은 도시설계 분야에서 대학졸업 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회내 정회원과 도시설계 분야의 대외 인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후보와 심사위원장을 추천하고,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.
- ② 심사위원장은 학술상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.

제 9 조 (심사의 단계) 심사는 부문별심사, 종합심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모든 심사 내용은 비밀로 한다.

제 10 조 (분야별 심사)

- ① 분야별 심사위원회는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정하고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수상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.
- ②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시상분야별 제3조의 시상 의의에 비추어 학술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한다. 각 위원별 심사결과는 별표 3의 양식으로 제출한다.
- ③ 심사위원별 제출된 심사조서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위 3명의 수상후보자를 선정

한 후,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야별로 2명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.

제 11 조 (종합심사)

- ① 분야별 최종수상자는 분야별 심사에서 추천된 복수 후보자에 대하여 종합심사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② 전체 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분야별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,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통해 결정한다.

제 12 조 (수상자 선정) 수상자 선정은 2/3 이상이 참석하는 종합심사회의에서 부문별 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대상자 중 2/3이상 득표한 자를 학술상 수상자로 한다. 투표는 부문별로 나누어 시행하며, 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.

제 13조 (심사수당) 심사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.

제 3 장 시 상

제 14 조 (시행일) 학술상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4 조의 2 (상의 수여) 학술상은 상장,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.

제 15 조 (기타사항)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2) 공적조서 요약서

공적조서 요약서

인적 사항 및 추천부문			
성명(한자)		국 적	
생 년 월 일	남/녀	소속기관/직위	
연락처(이동통신 등)		수공기간	년 월

최종정규학력 및 주요경력(최근 순으로 기재)	
년 월 일	내 용

과거 포상 기록(최근 순으로 기재)			
년 월 일	내 용	년 월 일	내 용

공적요지(40자 내외)

주요 공적 내용 (300자 내외, 개조식으로 작성)
 (개조식 : 1, 2, 3... 또는 가, 나, 다... 등의 구분임)

(Empty space for main achievements)

학술활동 및 연구개발실적

논문 (최근 10년간)	국내 : 편 국외 : 편	저 서	국내 : 편 국외 : 편	학술발표	국내 : 편 국외 : 편
논문지도	박사 명, 석사 명	작 품	국내 편, 국외 편	논문인용 실적	S.C.I. : 회/편 기 타 : 회/편

대표적인 저술논문/작품/제목

(Empty space for representative publications)

(별표 3) 심사조서

심사조서

성명	한자) 영문)		
주민등록번호			
생년월일	전화번호: _____		
수상분야			
저술, 논문, 작품명			
심사요지 (50자 내외)	심사분야코드	—	
수상적합 여부	분야내 추천순위		
심 사 자			
소속	직위		
직급	성명	인	
위와 같이 학술상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.			
200 년 월 일			
심사자 직위 :		성명 : 인	